【 23 】양주군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연월일 : 1998. 12. 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수정이유

○ '98.11.23 제출된 양주군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적용대상중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잔여면적이 대지 최소한에 미달되는 경우 건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코저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제2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장애인의 자가운전자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과 경자동차(8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며,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자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1. (생략) 2.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1. ----- 2.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생략) ②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① ----- ②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중 잔여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미달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경우에는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

●주차장법시행령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전문개정 1990·8·8 대통령령제13066호
개정 1991·4·23 대통령령제13359호(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5·30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1992·6·30 대통령령제13672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2·18 대통령령제14530호
1995·12·30 대통령령제14891호(건축법시행령)
1996·2·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1996·6·4 대통령령제15017호
1996·6·29 대통령령제15097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2·24 대통령령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2·18, 9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96·6·4〉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6·6·4〉

〔본조신설 92·6·30〕

제2조 및 제2조의2 삭제 〈96·6·4〉

제3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6.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취지를 노외주차장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3.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본조신설 96·6·4〕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 〈신설 95·2·18〉

1.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다. 숙박시설
   라.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다)
2. 당해 시설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95·2·18, 96·6·4〉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4〉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